

釜山外國語大學校 比較法研究所
比較法學 第19輯(2008)

라틴아메리카 여성법의 발전방향

이 순 주*

<목 차>

- I. 서론
- II. 라틴아메리카 여성 관련법의 바탕과 역사
- III. 라틴아메리카 여성의 법적 지위현황
- IV. 라틴아메리카 여성 관련법 개정의 최근 동향
- V. 결론

I. 서 론

라틴아메리카의 여성권리에는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영향과 ‘마치스모’라는 사회문화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주어왔다. 예를 들면 이혼의 금지, 낙태의 지속적인 금지 등은 가톨릭의 영향이 법의 틀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주어온 사례로 볼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여성권리 관련법은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리보다는 여성의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었고, 최근 성공적으로 수립된 법안수립의 배경에는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보다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해당하는 법안들이 많다.(Blofield and Haas,2005)

* 부산외국어대학교

그러나 최근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등장한 양성평등의 주류화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선,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분출되기 시작한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존재가 그 바탕을 이룬다. 또한 수차례의 국제회의와 미주 국가 간 회의 등을 통해 ‘인권’으로서의 여성 권리인식이 확대되고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을 통해 여성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당위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해 라틴아메리카지역의 독립초기 여성관련법의 특징, 현대사회에서의 라틴아메리카 여성관련법 현황,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라틴아메리카 여성 관련법의 바탕과 역사

라틴아메리카의 ‘정복’은 기존 원주민사회의 법적 틀을 포함한 모든 관습들을 변경시키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 처음 들어온 시기에는 급격하게 여성배우자가 바뀌기도 했고, 원주민 사회내의 젊은 남성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인 결혼 형태였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따라 일부다처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많은 원주민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로 남게 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정복자의 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민시대의 여성들은 스페인 왕실이 만든 원주민 보호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노예와 같은 지위를 면할 수 없었다. 특히 ‘엔꼬미엔다’라는 대농장제는 원주민 여성들이 정복자인 남성 정착자들에 대해 예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은 식민시대의 여성과 남성의 관계뿐 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의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독립이후의 라틴아메리카 공화국들의 헌법은 프랑스의 나폴레옹법(code Napoleon)과 미국헌법을 혼합하여 만들어졌다. 나폴레옹법은 이론상으로는 ‘평등’을 옹호하고 있으나 실제 여성에게 적용했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 나폴레옹 법에 근거한 가부장적 시민법이나 노동법에서는 여성들을 열등하고, 허약하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아내와 어머니의 존재는 항상 그들의 남편의 권위에 예속된 존재로 규정되었다. 독립한 공화국의 헌법에서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민법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자신들의 재산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으며, 노동을 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자녀에 대해서도 남편과 공동으로 친권을 가질 수 없었으며 상속도 장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이러한 법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의 무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FAO)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은 관습에 기초한 이러한 차별적인 남성과 여성의 법적 지위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견해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III. 라틴아메리카 여성의 법적 지위현황

1. 헌법상의 지위

일반적으로 헌법은 목적법의 성격이 강하므로 개인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나 개인과 재산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상에서는 두드러진 차별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의 헌법에서는 ‘성별, 인종 및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별간의 평등을 언급

할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개인적, 사회적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¹⁾ 아르헨티나의 헌법에서는 평등권에 대해 여성과 남성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권리에서만 남성(varones)과 여성(mujeres)을 언급하고 있다.²⁾

2. 민법에서의 여성지위

라틴아메리카에서 결혼 후 남편의 권한(potestad marital)은 자녀에 대한 친권(patria potestas)과 함께 여성이 남성에게 예속되는 법적 근거였다. 특히 “potestad marital”은 결혼한 남성에게 부인과 부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³⁾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법적인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하고, 남편이 선택하는 곳에서만 살아야 하며, 가정을 벗어나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부인이 자녀나 가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언제라도 그 일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남편의 법적 권한은 다양했다. 예를 들면, 엘살바도르에서는 1983년 민법에서는 남편이 모든 가정사를 결정하고, 법적으로 자녀를 대표하며,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가지고 있었다.(FIO 2004, 201) 결혼한 여성은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는데, 니카라과에서는 아내는 반드시 남편과 함께 살아야만 했고, 파나마와 파라과이에서는 주거지를 선택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남편의

1) 예를 들면, 멕시코의 경우 헌법 제 4조에 ‘El varón y la mujer son iguales ante la ley. Esta protegerá la organización y el desarrollo de la familia’라고 명시했다. 칠레에서는 헌법 제 19조 2항에서 ‘Hombres y mujeres son iguales ante la ley’, 콜롬비아에서는 헌법 제 43조에 ‘La mujer y el hombre tienen iguales derechos y oportunidades. La mujer no podrá ser sometida a ninguna clase de discriminación.’라고 명시하고 있다.

2) 헌법 제16조 ‘Igualdad de todos los habitantes ante la ley’, 헌법 제37조 ‘La Igualdad real de oportunidades entre varones y mujeres para el acceso a cargos electivos....’

3)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민법에서도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출처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등록되어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Artículo 1276CC)

선택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도미니카공화국에서도 남편이 주거지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었다. 노동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어있던 국가도 많다. 볼리비아,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등에서 여성들을 남편의 동의 없이는 노동을 할 수 없었다. 멕시코의 경우 모든 주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⁴⁾. 자녀에 대한 친권은 자녀에 대한 의무보다도 권리의 측면에서 규정되어온 경향이 크다.

친권은 아버지에게만 주어지거나, 재산 등록자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혹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부친에게 부여함으로서 여성의 남편에 대한 예속을 강화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민법에서는 친권에 관해서는 각 국가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양친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하는 경우와 부친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拉斯,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양친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여하는 사례들이다. 반면, 칠레,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파라과이 등은 부친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왔다.(FAO)

법적 결혼을 제외한 사실혼 관계는 식민시대부터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가톨릭적 전통과 함께 식민지 내에서의 원주민과 백인들의 사실혼 관계를 모두 인정할 경우에 생길 혼란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법적인 결혼만 혼인관계로 인정하고 나머지의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었다. 최근에는 쿠바, 에콰도르, 온두拉斯, 멕시코, 파나마, 니카라과, 페루 등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결혼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법적인 보호장치가 매우 취약하여 여성들에게 불리하다. 이러한 상황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빈곤상태의 편도가정 비율이 높은 배경이 되어왔다.

4) 멕시코 시티, 따바스코, 미초아칸, 파나화또, 오아하까, 누에바 레온, 소노라, 아구아스 갈리엔테스, 두랑고.

3. 노동법에서의 여성지위

라틴아메리카에서 노동법은 도시지역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까지 라틴아메리카에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인구가 더 많았고, 주요산업은 농업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노동법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차이의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이 지역 사회에서 지배계급이었던 대농장주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

쿠바와 니카라과에서는 농촌의 여성과 남성노동자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인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 외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은 예외 없이 차별을 받았다. 특히 농촌여성들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았다. 하나는 여성노동자들이 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노동을 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노동법이 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들은 노동의 기회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한받아왔다. 여성의 노동의 기회를 제한해 온 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였다. 여성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남성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은 여성들이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볼리비아, 파테밀라, 멕시코 일부 주, 파라과이—가정에 소홀한 경우 언제라도 남편의 요구에 따라 노동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남편의 권한이 하나의 관습으로서 실제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노동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여성보호의 명목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위험하거나 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특정직종과 야간시간대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러한 금지의 혜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을 하게 된다. 즉, 금지된 불법노동활동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사회보장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출산과 모성보호법은 각국마다 해석과 기준들이 다양하다. 라틴아메리카 모든 국가는 모성보호에 관한 법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을 여성의 사회적 의무로 규정해 왔고, 이러한 인식의 틀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모성보호법이 변화되어왔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성별에 기초한 노동분업을 제도화 하고 모성을 직접적으로 재생산과 연결시켜 왔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재생산의 기능에 대한 책임을 사회나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모성에 관한 시각은 가족 내의 권력구조를 고착시킬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할당한다. 모성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은 고용주들이 여성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모성보호법은 여성들에게 어머니로서의 능력에 대해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가장 일반적인 모성보호법 형태는 산전, 산후휴가권⁵⁾, 해당 휴가기간 동안의 완전임금보장, 고용주의 해당노동자에 대한 재취업보장의무, 노동시간중 수유권, 육아를 위한 적절한 수유시설에 대한 권리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들은 고용계약서를 통해 고용된 도시지역 공식부문의 여성노동자들만이 누릴 수 있으며, 상당수의 도시지역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나 농촌지역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쿠바는 유일하게 모성을 사회적 기능으로 인식하고 국가가 가족, 모성, 결혼을 보호한다⁶⁾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공식노동계약이 없어도 일하는 어머니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출산과 육아, 노인보호 등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노동자 가족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⁷⁾

5)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주로 주(week)단위로 휴가기간을 설정하는 경향이 많다.

6) artículo 35o.- El Estado protege a la familia, la maternidad y el matrimonio.

7) artículo 44o.- La mujer y el hombre gozan de iguales derechos en lo económico, político, cultural, social y familiar. El Estado garantiza que se ofrezcan a la mujer las mismas oportunidades y posibilidades que al hombre, a fin de lograr su plena participación en el desarrollo del país. El Estado organiza instituciones tales como círculos infantiles, seminternados e internados escolares, casas de atención a ancianos y servicios que facilitan a la familia trabajadora el desempeño de sus

IV. 라틴아메리카 여성 관련법 개정의 최근 동향

라틴아메리카의 각 국가들은 최소 10여년이상 외형상의 민주주의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제도나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변화는 라틴아메리카 각 국들이 체결한 국제적 협약에 대한 이행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국제적 협약의 이행을 통한 여성권리강화

라틴아메리카의 여성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은 국제적, 지역적 협약들을 통해 발전해 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대륙전체 차원에서 이미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그 전신이었던 CIA(Conferencia Internacional Americana)는 미주 대륙내에서의 여성권리 증진과 보호를 주요 의제로 삼아 왔다. 1928년 쿠바의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6차 미주국가회의에서는 미주여성위원회(Comisión Interamericana de Mujeres, CIM)가 창설되었다. 이는 각국에서의 발전과정에 여성을 온전히 포함시키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권고하기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최초의 정부간 협의기구였다. 이 위원회는 미주국가들에서의 여성권리 보호를 위한 초기 기준들을 수립하기 위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성의 국적에 관한 미주회의(1933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여성의 정치적 권리 인정(1948년, 콜롬비아 보고타)’과 ‘여성의 시민권 인정(1948년, 콜롬비아 보고타)’등을 이끌어 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처벌, 예방을 위한 미주회의’의 전문작성과 편집에도 CIM이

responsabilidades. Al velar por su salud y por una sana descendencia, el Estado concede a la mujer trabajadora licencia retribuida por maternidad, antes y después del parto, y opciones laborales temporales compatibles con su función materna.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여성권리보호와 증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미주국가기구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처벌 및 예방에 관한 미주협약’인 벨렘 도 빠라 협약(Convenção Belém do Pará)을 채택했다. 이 의정서는 1995년 3월에 발효되었는데, 이 협약의 제 10조에 의거하여 협약가입국들은 여성 폭력에 대한 제반 현황을 미주국가기구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 수립해오고 있다.

<표 1> 미주국가기구 내 주요 협약에 대한 비준현황

국가명	CADH ⁸⁾		PROT. SAN SALVADOR ⁹⁾	CONV BELEM DO PARÁ ¹⁰⁾
	비준	의회승인		
Argentina	84년 9월 5일	84년 9월 5일	03년 10월 23일	96년 7월 5일
Bolivia	79년 7월 19일	93년 7월 27일	-	94년 12월 5일
Colombia	73년 7월 31일	85년 6월 21일	97년 12월 23일	96년 11월 15일
Costa Rica	70년 4월 8일	80년 7월 2일	99년 11월 16일	95년 7월 12일
Ecuador	77년 12월 28일	84년 7월 24일	93년 3월 25일	95년 9월 15일
El Salvador	78년 6월 23일	95년 6월 6일	95년 6월 6일	96년 1월 26일
Guatemala	78년 5월 25일	87년 3월 9일	00년 10월 6일	95년 4월 4일
Honduras	77년 9월 8일	81년 9월 9일	-	95년 7월 12일
México	81년 3월 24일	98년 12월 16일	96년 4월 16일	98년 11월 12일
Nicaragua	79년 9월 25일	91년 2월 12일	-	95년 12월 12일
Panamá	78년 6월 22일	90년 5월 9일	93년 2월 18일	95년 7월 12일
Paraguay	89년 8월 24일	93년 3월 26일	97년 6월 3일	95년 10월 18일
Perú	78년 7월 28일	81년 1월 21일	95년 6월 4일	96년 6월 4일
Venezuela	77년 8월 9일	81년 6월 24일	-	95년 2월 3일

출처: (FIO 2004, 56)에서 재인용

8) 인권에 관한 아메리카 협약(Convenção Americana sobre Derechos Humanos)로서 코스타리카 산호세 협정이라고도 한다. 1969년 11월 22일 인권에 관한 미주간 특별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78년 7월 18일에 발효되었다.

9) 산살바도르 의정서(Protocolo de San Salvador). 경제, 사회, 문화권에 관한 미주인권협약에 대한 부가의정서다. 1988년 11월 17일 산살바도르에서 채택되고, 1999년 11월 17일에 발효되었다.

10) 벨렘 도 빠라 협약(Convenção Belém do Pará).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처벌 및 예방을 위한 미주국가간 협약으로 1994년 6월 9일 브라질의 벨렘 도 빠라에서 채택되었고, 1995년 3월 5일에 발효했다.

<표 2>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의 여성관련 국제협약 이행정도(%)¹¹⁾

국가명	1995	2000	2003
Argentina	-	75.9%	-
Bolivia	51.7%	58.8%	60.0%
Brazil	68.9%	-	-
Chile	68.4%	74.0%	75.2%
Colombia	58.2%	68.0%	-
Costa Rica	70.9%	74.0%	-
Ecuador	56.2%	58.5%	-
El Salvador	58.4%	66.2%	68.2%
Guatemala	-	51.8%	-
Honduras	55.1%	59.6%	64.1%
Mexico	66.0%	65.7%	65.5%
Nicaragua	59.6%	50.4%	56.1%
Panama	64.1%	70.8%	68.2%
Paraguay	51.3%	64.9%	68.9%
Peru	57.9%	65.8%	65.9%
Dominica Republic	71.1%	72.6%	72.0%
Uruguay	-	-	-
Venezuela	60.5%	65.0%	66.0%
평균	61.2%	60.4%	66.4%

자료: (Valdes E;Muñoz B;Donoso O(eds.) 2004, 14)

국제적, 지역적 협약의 체결은 협약당사국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경향을 가진다. 특히 최근의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설치 및 제도적 발전도 상당부분 이러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그 이행의 국가적 책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구나, 행정부 혹은 외교부 산하에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설립되어있으며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 법개정을

11) 이러한 이행에 관한 비교는 3가지 항목 여성의 정치참여, 경제적 자립과 빈곤, 여성의 보건 및 성적, 재생산권리의 3가지 항목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합한 것이다.(Valdes E;Muñoz B;Donoso O(eds.) 2004).

위한 준비와 여성정책을 수립하기도 한다. 칠레의 SERNAM(Servicio Nacional de la Mujer)은 외교부 소속으로 있다가 법적 근거를 통해 독립적인 여성정책전담기구로 승격된 사례다. SERNAM를 법에 근거하여 설립했다는 점은 칠레 국가구조내에서 이 기구를 영구적인 부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더 보수적인 정부가 권력을 잡게 되지 않는 한 이 기구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예를 들자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Consejo Nacional de la Mujer*는 대통령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까를로스 메넴 대통령의 여성권리에 대한 지지는 이 기구가 광범위한 권한과 넉넉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즈음, 아르헨티나에서 여성권리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을 때, 메넴 대통령은 보수세력 편에서 급작스럽게 위원회의 활동을 축소시키고 예산도 감축시킨바 있다.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에는 여성관련 정부기구는 행정령에 의해 만들어졌고, 훨씬 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의 경우 다양한 정당의 새정부들에 의해 폐쇄되기까지 한 바 있다.(Friedman 2000, 58-6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설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각국 여성권리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정의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IO(Federación Iberoamericana de Ombudsman)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개선권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인권’으로서의 여성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1) 가족관계, 2) 성 착취 및 폭력 3) 정치참여 4) 교육이 중심이 되어오고 있다. 가족관계와 관련한 여성권리는 민법에서의 양성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누릴수 있는 법적보장이 중심이 되고 있다. 성 착취 및 양성 폭력근절에 대한 내용은 가족 내의 폭력, 사회에서의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어오고 있는 분야다.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평등은 비교적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분야에 해당된다.

2. 정치적 권리의 확대-여성할당제

여성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1929년 에콰도르에서다. 이후 1931년에 칠레와 우루과이에서 인정되었으며, 가장 늦게 이루어진 국가는 파라과이와 엘살바도르인데, 30여년 후인 1961년에 인정되었다.(Peschard, 173)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헌법상에서 시민의 법적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법적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에 그치고 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의 정치적 권리는 빠르게 증진되고 있다. 이는 여성할당제 도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는 현재 12개 국가이며 아르헨티나(Ley 24012 / Decreto 379/93)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91년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첫 총선에서 상원에는 34.72%, 하원에는 29.5%의 여성이 진출했다.

<표 3> 라틴아메리카 여성할당법 현황

Tabla 11. Leyes de cuotas y composición por género de las Cámaras de Diputados en 12 países de América Latina				
País	Año de la reforma	Cuota mínima por ley	Ubicación específica en la lista	Tipo de listas
Argentina	1991	30%	Sí	Cerrada
Costa Rica	1997/2000	40%	Sí	Cerrada
Perú	1997	25%	No	Abierta
Rep. Dominicana	1997	25%	No	Cerrada
México	1996	30%	No	Cerrada
Ecuador	1997	20%	Sí	Abierta
	2000	30%		
Bolivia	1997	30%	Sí	Cerrada
Colombia*	2000	30%	No	Cerrada
Panamá	1997	30%	No	Abierta
Venezuela**	1997	30%	No	Cerrada
Brasil	1997	30%	No	Abierta
Paraguay	1996	20%	Sí	Cerrada

*La disposición de cuotas se refiere a cargos administrativos
** La cuota fue rescindida posteriormente

Fuentes: Adaptado de Mala Htun y Mark Jones. 2000. Cuotas y mujeres en América Latina; "Leyes de cuotas". Comisión Interamericana de Mujeres - Organización de Estados Americanos; [Internet]: <http://www.oas.org/CIM/spanish/leyesdecuotas.htm>

이러한 여성할당제도 각 국가마다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 다르다. 할당비율도 다르고, 선거 시에만 할당제를 실시하는 국가도 있고, 공무원의 비율에도 할당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실제로는 선거에서 정당들의 후보명부에서 여성들의 순서를 정해두지 않은 경우-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할당비율만 맞추고 여성들의 순위를 뒤에 둘으로서 실제 여성들의 의회진출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적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총 12개 국가이며 칠레에서도 이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여성할당제는 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향후 더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새로운 양성평등의 법적 시도-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헌법¹²⁾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헌법은 많은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남녀평등 대 헌법(non-sexist Magna Carta)”으로 볼리올 정도로 여성들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우선 헌법에 사용되는 모든 인칭에서 남성형과 여성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¹³⁾ 이러한 사례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다.

12) 베네수엘라는 1999년 12월에 공포된 베네수엘라의 새헌법을 통해 국가명을 ‘베네수엘라 공화국’에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독립영웅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를 기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 받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베네수엘라 헌법은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라고 한다. 이 헌법의 내용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일부 조항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적 내용과도 상당히 다른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2007년 12월 초 집권자(우고 차베스, Hugo Chávez)의 장기집권의도화 함께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내용들을 골자로 한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가 부결되었다.

13) 예를 들면 los venezolanos y venezolanas, Presidente o Presidenta, Vicepresidente Ejecutivo o Vicepresidenta Ejecutiva 등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노동이나 모든 사회적 활동에 있어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75조에서 제77조까지는 '가족의 민주화'를 비롯한 여성의 재생산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신과 출산 등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차베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미션 (misión)'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 연동되어 출산 및 양육을 사회화하고 있다.(전소희, 정주연 2007)

제86조는 공공서비스의 보편성과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88조는 "국가는 가사 노동을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복지와 부를 생산하는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부는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회복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다.¹⁴⁾

이 헌법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후 관련 법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 여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게끔 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예컨대, 헌법을 기반으로 여성 관련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던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전업 주부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던가, 아니면 벤민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주거나 낙태를 합법화¹⁵⁾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여성 관련 각종 개혁의 물꼬를 뒀다. 또한, 성차별적이지 않은 언어로 작성된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헌법으로 말미암아 이후 모든 공식 정부 문서나 규정, 법령도 이런 표기법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전소희, 정주연, 2007/6/13) 이러한 헌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한계가 존재하지만 양성평등

-
- 14) Artículo 88. El Estado garantizará la igualdad y equidad de hombres y mujeres en el ejercicio del derecho al trabajo. El Estado reconocerá el trabajo del hogar como actividad económica que crea valor agregado y produce riqueza y bienestar social. Las amas de casa tienen derecho a la seguridad social de conformidad con la ley.
 - 15) 낙태 합법화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76조에 근거하고 있다. Artículo 76. Las parejas tienen derecho a decidir libre y responsablemente el número de hijos e hijas que deseen concebir y a disponer de la información y de los medios que les aseguren el ejercicio de este derecho.

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 선도적 사례라는 점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내에서의 여성관련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한국과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의 여성관련 법은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UN뿐만 아니라 미주국가기구(OAS)에서 주관하는 정기, 비정기 회의를 통해 여성권리보호를 위한 새로운 협정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행동강령들을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국제기구를 통한 여성권리보호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이미 다양한 여성의 인권, 사회권, 경제권, 문화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할당제의 확대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미 니카라과, 파나마, 칠레 그리고 올해(2007) 아르헨티나에서도 여성대통령이 등장하고 여성할당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괄목할 만큼 증대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존재하는 국가 수는 총 33개국이나 되고, 각국의 정치, 사회적 특성이나 경제규모도 다르다. 각 국가의 실질적인 여성의 지위는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다양한 국제협약과 각국의 여성정책전담기구 그리고 여성운동 등을 통해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실제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 제도의 변화는 실제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여성지위향상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주제어 : 마치스모, 여성의 법적지위, 남편의 권한, 가톨릭, 할당제
Key Words : Machismo, women's constitutional status, potestad marital, catholicism, quota system

참고문헌

- Blofield, Merike H. and Liesel Haas(2005) Defining a Democracy:
Reforming the Laws on Women's Rights in Chile, 1990–2002.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47. No.3, pp.35–68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1994)
"The Legal Status of Rural Women in 19 Latin American
Countries" <http://www.fao.org/docrep/U5615E/u5615e02.htm>
- FIO(2004), *Derechos de la Mujer: II Informe sobre derechos
humanos*, Federación Iberoamericana de Ombudsman.
- Fridman, Elisabeth J.(2000) *Unfinished Transitions: Women and the
Gendered Development of Democracy in Venezuela, 1936 -
1996*. University Park, Pen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Peschard., Joaquin(2002) "El sistema de cuotas en América Latina:
Panorama general" [http://www.idea.int/publications/wip/
upload/chapter_04a-CS-LatinAmerica.pdf](http://www.idea.int/publications/wip/
upload/chapter_04a-CS-LatinAmerica.pdf)
- Valdes, E., B. Muñoz y O. Donoso(eds.)(2004), *1995–2003: Have
Women Progressed? Latin American Index of Fulfilled
Commitment*, FLACSO/UNIFEM
- 전소희, 정주연(2007) 차베스의 ‘볼리바리아 헌법’과 여성:(2) 베네수엘라
혁명, 여성에게도 혁명인가?, [http://www.newschaum.net/news/
view.php?board=news&nid=41315](http://www.newschaum.net/news/
view.php?board=news&nid=41315)
- 라틴아메리카 각국 헌법
<http://pd़ba.georgetown.edu/Constitutions/Venezuela/ven1999.html>
<http://pd़ba.georgetown.edu/Constitutions/Argentina/argen94.html>

<http://pdba.georgetown.edu/Constitutions/Chile/chile05.html>

<http://pdba.georgetown.edu/Constitutions/Colombia/col91.html>

<http://pdba.georgetown.edu/Constitutions/ElSal/ElSal83.html>

<http://pdba.georgetown.edu/Constitutions/Mexico/mexico2004.html>

Abstract

The Development of Latin American Laws for Women

Lee, Soon-Joo

In Latin America, there exist many socio-cultur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at reveal male-oriented culture called “Machismo”. As a system, law describes basic category of life for women and men. This article is to describe some basic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n law and to explain some changes of Latin American law from women's perspective. For that, I describe foundation and history of Latin American Laws for Women, Constitutional status of women, and major changes of latin american laws for women. Recent changes of laws in favor of women are affected by expansion of women's political rights through introduction of quota system and by changes of international pacts and agreements.